

복지후생규정

제정 1983.12.26	규정 제 8호	2000. 4.17	규정 제315호
개정 1985. 2.11	규정 제 27호	2001. 3. 7	규정 제338호
1987. 9. 7	규정 제 59호	2001.10.18	규정 제377호
1988. 2. 4	규정 제 62호	2002. 7.16	규정 제391호
1991. 3. 7	규정 제103호	2002.10.19	규정 제412호
1991. 9.20	규정 제116호	2004. 1.31	규정 제464호
1992.11.24	규정 제130호	2005. 1.26	규정 제492호
1993. 6.26	규정 제134호	2006. 1. 9	규정 제520호
1994. 6.20	규정 제167호	2006. 3. 7	규정 제549호
1994.10.18	규정 제174호	2008. 2.18	규정 제607호
1994.12.31	규정 제185호	2009. 3. 1	규정 제629호
1996. 1. 8	규정 제194호	2012. 4.10	규정 제696호
1996. 7.10	규정 제205호	2014. 4. 1	규정 제738호
1997. 9.27	규정 제249호	2015. 3.31	규정 제770호
1998. 1.10	규정 제26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이하 “공단” 이라 한다)직원의 건강과 복리후생 및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공단의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이 규정에서 직원이라 함은 임원 및 직원을 말한다.

제2장 안전과 보건

제3조(안전 및 보건관리) 직원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건강진단)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은 매년 정기적으로 1회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의료시설)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공단에 의료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외부 의료기관을 지정 이용할 수 있다.

제3장 후생

제6조(후생시설운영)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내휴게소, 구내식당, 구내이발소 및 기타 후생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2012.4.10)

제7조(후생비 지급) ①직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보조비와 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 | |
|-----------|-------------------|-----------------------|
| 1. 급식보조비 | 2. (2012.4.10 삭제) | 3. 월동보조비 |
| 4. (삭제) | 5. (2002.7.16 삭제) | 6. (삭제) |
| 7. 특수직장려금 | 8. (2012.4.10 삭제) | 9. 행사보조비(신설1997.8.25) |

- 10. (2006.1.9 삭제) 11. 효도휴가비(신설 2001.3.7)
 - 12. 직책급수행비(직위자에 한함)(신설 2001.10.19)(2006.3.7 개정)
 - 13. 직급수행보조비(비직위자에 한함)(2006.3.7 신설)
 - 14. (2015.3.31 삭제) 15. 선택적 복지비(본호신설 2009.3.1)
- ②제1항 제1호 내지 제15호의 후생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본항개정 2002.7.16, 2008.2.18, 2009.3.1)

제7조의2(학자금 보조) ①공단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학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대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하여는 학자금을 대출할 수 있으며, 학자금 대출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2006.1.9 단서 신설)

- 1. 지급대상 : 고등학교(1997.8.25)(2006.1.9)(2015.3.31)
 - 2. 지급한도액 : 정부고시금액(2015.3.31)
- ②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에 대한 학자보조금은 제1기분은 3월, 제2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월, 제4기분은 11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1997.9.27, 2006.1.9, 2012.4.10, 2015.3.31)
- ③제1항의 “자녀” 라 함은 동일호적에 있는 자녀(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이혼한 여자직원의 자녀를 포함한다)를, “고등학교” 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학자금” 이라 함은 수업료와 육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써 매기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신입생은 입학금을 포함한다.(2006.1.9. 2015.3.31)
- ④학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직원은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 및 등록금 납입고지서를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과 입학증명 관계서류를 포함한다.
- ⑤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전액 면제되거나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학자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학업성적 우수자 또는 체육특기자로 장학금을 지급받거나 학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면되는 자에 대하여는 동학비를 전액 지급한다.
- ⑥취학자녀의 부모가 모두 직원으로서 동시에 지급대상일 경우 1인에게만 적용한다.
- ⑦학자금은 매분기 초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직 또는 퇴직으로 분기 중에 수급자격이 상실되는 직원의 경우에는 당해기분의 학자금을 환수하지 아니한다. 단, 직원 신분은 계속되나 그 취학자녀가 학비를 납부하고 사망, 퇴학 또는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학비를 전액 지급한다.(2006.1.9)
- ⑧직원이 허위, 부당한 방법 등으로 과다 지급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공제회수할 수 있다.
- ⑨ (신설 2014.4.1)(삭제 2015.3.31)

제8조 (2006.1.9 삭제)

제9조 (2005.1.26 삭제)

제10조(통근차 운행)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근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제11조(피복지급) ①공단은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적합한 피복을 직원에게 지급하여 착용하게 할 수 있다.

②피복사용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되 동복(제모 및 특수복 포함)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분실 훼손 또는 오염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재지급할 수 있다.

③피복의 수선 및 세탁비 등 필요한 비용은 착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4장 체육

제12조(직장체육진흥) 직원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기타) 직원의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시설 및 대내외 행사를 할 수 있다.

제5장 재해보상

제14조(재해보상) ① (삭제 2015.3.31)

②이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본항신설 2014.4.1)(삭제 2015.3.31)

제6장 보칙

제15조(지급의 특례) ①이 규정에 의한 제반 복지후생 실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②공무원 신분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는 공무원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사장이 결정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된 후생비 지급 및 직원복지에 관한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것으로 본다.

부 칙('85.2.11)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7.9.7)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7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파견된 근무자는 본 규정에 의하여 소급 적용한다.

부 칙('88.2.4)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1.3.7)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학자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1991년도 신학기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에 의한 학자보조금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중 1990년도 당시의 3인이상 자녀가 학자보조금을 지급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이 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1991년도에 한하여 종전 수혜자녀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부 칙('91.9.20)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2.11.24)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행일 이전에 입사한 직원에 한하여 제7조 제4항, 제7조의2 제7항의 경과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93. 6.26)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4.6.20)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4.12.31)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6.1.8)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9.27)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8.1.10)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4.17)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3.7)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0.18)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7.16)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0.19)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3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26)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 9)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3.7)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7조의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2. 18)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3.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 4.10)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4. 1)

①(퇴직수당 폐지에 따른 직원 격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입사한 일반직(퇴직금 중간정산일로부터 만5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 근속년수가 5년 미만인 직원 제외)에 대하여 퇴직수당 손실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4년 1월 1일부터 만5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의 년수로 나눈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매년 균등하게 선택적 복지비로 지급한다.

1. 만58세 까지 근무하는 경우 : 만58세 까지 지급

2. 만58세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 퇴사 시점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

②(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 3.3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